

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
(공익법인등 작성용)

(앞면)

1. 기본사항

①공익법인명		②사업자등록번호 (고유번호)	
③대표자 성명		④당기 과세연도	. . . ~ . . .
⑤소재지		⑥전화번호	
		⑦전자우편주소	

2. 기초자료 명세

(단위 : 원)

⑧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				
⑨ 최근 4개 과세연도 감사인 선임방법 (자유선임, 지정, 해당 없음 중 선택)	당기	전기	2기전	3기전
⑩ 당기 감사인	감사인명	사업자등록번호	감사대상 과세연도	
			. . . ~ . . .	
⑪ 과거 4년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여부	1.여 ☐ 2.부 ☐			
⑫ 과거 4년내 감리결과 (⑪에서 [여]인 경우만 작 성)	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		회계처리기준 위반 없이 감리가 종결된 일자	
	1.여 ☐ 2.부 ☐			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의2제2항 및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
라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: (서명 또는 인)

국세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상태표 등) 2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감사인 또는 「공인회계사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 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감사인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한 자료
------	--

작성방법

1. 기본사항(①~⑦)

- 가. 기본사항란(①~⑦)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.
- 나. ④당기 과세연도란은 제출일이 속하는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.
- 예) 결산일이 없거나 12월 31일인 경우 → (예) 2021. 1. 1. ~ 2021. 12. 31.
- 결산일이 2월 말일인 경우 → (예) 2021. 3. 1. ~ 2022. 2. 28.

2. 기초자료 명세(⑧~⑫)

- 가. ⑧총자산가액란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(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)을 원 단위로 기재합니다.
- 나. ⑨최근 4개 과세연도 감사인 선임방법란은 공익법인의 당기(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) 및 당기 이전 연속하는 3개 과세연도 외부감사를 “자유선임” 또는 “지정”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, 자유선임인 경우 “자유선임”, 기획재정부장관(국세청장)으로부터 지정받은 경우 “지정”이라고 기재합니다.(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과세연도는 “해당없음”을 기재)
- ※ 지정기준일은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11개월 15일이 되는 날입니다.
- 예) 과세연도 시작일이 1월 1일인 경우 11월 15일,
과세연도 시작일이 3월 1일인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(1월 15일이 일요일인 경우 1월 16일)
- 다. ⑩당기 감사인란은 당기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, 감사대상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.
- 라. ⑪과거 4년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여부는 지정기준일부터 과거 4년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(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)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.
- 마. ⑫과거 4년내 감리결과란은 ⑪에서 “1.여”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는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.